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주차장 진입도로 시공 관련 토지 보상 신청

□ 신청 원인

- 신청인은 ○동 ○○○-○ 및 ○○○-○○ 필지 토지의 부분 소유자로, 토지가 주차장 진입 도로로 무단 시공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요청함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해당 토지는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임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 용지 보상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지급이 어려움
- 현재 해당 지역(도로)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계획이 없는 바, 추후 도시계획사업(도로)이 추진 될 시 매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

□ 사실관계

- 위 토지가 신청인 소유이며, 해당 토지를 구청에서 도로 등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
- 따라서, 구청은 신청인에게 그동안의 자료와 미래의 자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함. 다만, 신청인은 위 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종국적인 사건 해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

□ 관계법령 등

- 「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 용지 보상 규칙」

□ 판단 및 결론

- 미불용지 보상이나 수용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는 것을 권고
- 결론 : 의견표명
 -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임대료 지급 및 미불용지보상 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 의견표명
 - 현재, 신청인 요청에 따라 해당 필지의 준용도로 매수 요청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임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여권 사무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 요청

□ 신청 원인

- 신청인은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시한 여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려된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없이 다시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민원 제기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여권 신청서 발급 좌석에 여권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,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함

□ 사실관계

- 해당 부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, 여권 신청서 작성 자리에 여권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으나 글씨가 작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

□ 판단 및 결론

-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아 반려할 경우,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
- 결론 : 의견표명
 - 추가적으로 민원인이 보다 쉽게 여권 사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 신청 창구에 안내문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 제안
 - 여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반려할 경우,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불편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및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을 확대하여 추가 비치 완료